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별내선(8호선연장) 1공구 건설공사〕

□ 점검일시 : 2019.08.08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임시로 설치한 집수정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
- ① 추락방지시설(난간 등) 설치
- ② 발판 설치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8조(울타리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굴착작업중인 3구간으로 출입하는 계단은 상부난간대가 낮으니(약60cm)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.
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시점부(1구간) 복구작업중으로 인양작업 시 유도로드를 사용토록 교육하기 바람, 작업반경 하부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관리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3(낙하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3구간 굴착작업 중으로 사면 및 소단에 자재 등이 적치되어 낙하위험이 있으니 지면 등 낙하 위험이 없는 평평한 곳으로 이동조치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(경사면에서의 중량물취급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소화기는 장소에 따른 조건을 고려하여 화재 초기진압에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고, 게이지가 파손된 소화기는 즉시 교체 등 조치하기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사용이 완료된 가스(산소,LPG)는 잔여가스를 제거한 후 보관하기 바람, 복공하부로 연결되는 호스는 날카로운 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

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안전모보관소에 보관중인 박리제는 위험물보관소로 이동조치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보관소)

